

# 예산총칙

201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36,239,742	34,087,192
일반회계	955,090,549	28,652,716
특별회계	181,149,193	5,434,476
공기업특별회계	115,076,368	3,452,29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8,200,524	1,446,01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73,032	44,19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5,402,812	1,962,084
기타특별회계	66,072,825	1,982,185
주택사업특별회계	76,425	2,293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6,595,800	197,874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77,600	2,328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4,289,990	128,7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2,543,059	976,292
지하수특별회계	1,337,771	40,13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430,229	72,90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827,577	144,827
수질개선특별회계	13,380,624	401,419
기반시설특별회계	513,750	15,413

제 2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다.

제 3 조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352,93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교부되는 국도비와 교부세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